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지요?

수 있다.

1.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장애의 상태가 변동되어 장애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A 장애급여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후 전환은 불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에서 일시금으로 전환할

Q 점심시간 중 회사 내 축구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사고 발생 시 산재 인정이 되는지요?

A 축구경기가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친선경기이며, 회사나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서클이 주최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님은 물론 그 참가가 강제된 것도 아니고, 축구장 시설에 어떤 하자도 있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한국중립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한·방·상·식

한방 1과 과장 박주한



건강하던 사람이 증풍으로 갑자기 사망하거나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적잖게 볼 수 있다. 북병처럼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다가 일격에 치명타를 안겨주는 이 증풍은 우리가 실제로 두려워하는 암보다도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훨씬 높다.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1위는 증풍이며, 2위와 3위는 심장병이다.

증풍 극복할수 있다(1)

고 환자의 간병에 오류를 범한다면, 환자의 재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을 자주 보아 왔다. 이에 지금까지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증풍의 예방법과 증풍환자나 보호자가 알아야 할 기초 정보를 모아 제공하려 한다.

증풍(뇌졸중)이란 뇌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하여 뇌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손상된 부위에 따라 갑자기 의식장애와 함께 신체의 반신에 마비 증상 등이 급격히 발생하는 병이다. 증풍의 종류에는 첫째, 뇌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점차 좁아지고 또

한 혈관내면에 피가 응고되어 혈전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점점 막히게 되어 혈액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므로 뇌기능의 장애가 오는데 이를 뇌혈전증이라고 한다. 둘째, 심장질환이 있으면 심장내에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겨 부분적으로 피가 엉기고 또 동맥경화증이 있는 혈관의 내벽에 생긴 혈전이 떨어져나가 혈관을 타고 흘러가서 뇌의 작은 혈관을 막게 되는 수가 있는데 이를 뇌전색증이라고 한다. 셋째, 고혈압환자나 뇌동맥류, 뇌동맥경화증이 있던 환자가 얇아진 혈관에 갑자기 화를 내거나, 힘을 강하게 쓸때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므로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발생할수 있다. 끝으로 기타 일과성 뇌허혈발작증이 있는데 이는 뇌동맥경화가 생긴 미세혈관부위에 혈괴가 정체되면서 혈류가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뇌에 혈액순환이 안됨으로 가벼운 수족마비, 현기증, 경련 등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의정부한방병원(820-7200) www.yjhanbang.co.kr

의·학·상·식

포천의료원 외과과장 문민호



합니다. 석회질은 무엇입니까?

흔히 유방촬영술 후 유방 속에(하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유방내에 석회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조기 유방암의 소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석회화는 양성이며 그 모양과 분포로 악성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구별이 잘 되지 않거나 의심되면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유방촬영술에서 섬유질이 뭉쳐있는데 요. 무슨 말인가요?

유방조직이 치밀한, 고밀도 유방이라는 것으로 유방암과는 무관합니다.

고밀도 유방은 유방촬영술에서 하얗게 보이며 유방암이 가려져서 안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밀검사로 유방 초음파가 도움이 됩니다.

▶칼을 대지 않고 조직검사를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최근 기계의 발달로 대부분 비수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술적 조직검사는 세포검사, 총조직검사, 맘모를 검사 등이 있는데 특히 초음파를 보면서 조직검사를 시행하면, 조그만 병변도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포천의료원(031-539-9114)

유방암 조기발견

단방사선화 전문의가 가장 잘 합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하는데 너무 불안해요.

유방촬영술에서의 양성가능성(3군)으로 분류된 경우 6개월 추적 검사를 요합니다. 이 경우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하여 변화가 있으면 그때 조직 검사를 하면 되고, 만약 그때 암으로 진단되더라도 처음 발견되었을 때 치료하는 것이나 치료성적은 거의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진을 판독해주는 선생님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라면 6개월 후 다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간단한 조직검사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방촬영술에서 석회질이 보인다고

(지난호에 이어서)

▶유방촬영술은 몸에 해롭지 않을까요?

최근의 유방촬영술 장비는 방사선 조사량이 적어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는 무시할 정도이나, 불량 장비로 무분별하게 촬영하는 것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이 성장, 분화하고 있는 10~20대 젊은 여성의 기본 검진법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유방영상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암인가요?

아닙니다. 진단은 정상, 양성, 양성가능성, 악성가능성, 악성으로 분류하는데 정상과 양성 소견은 정기적인 검진만 하면 되며 양성가능성의 병변은 6개월 추적검사를 요합니다. 악성 가능성과 악성일 경우 조직 검사를 하며 약 10~50%에서 암으로 판명됩니다. 이러한 진단은 유방영상검사에 익숙한 진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는 甲회사가 乙은행으로부터 금 2,000만원을 빌리면서 1987년 4월 30일을 변제기로 하는데, 丙과 함께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丙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乙은행은 1988년 5월 7일 甲회사와 丙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두었고, 乙은행은 위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 받은 후, 1988년 4월 16일 甲회사와 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제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어만 하는지요?

해관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채권이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 이외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A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당

또한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附從)한다고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고,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이후의 시효기간까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닌 것입니다.(대법원 1986.11.25. 88다카1569). 따라서 지급명령의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의 상시시효기간이 경과한 1993년 5월 7일 귀하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乙은행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책임 없음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종전의 민사소송법 제445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 1. 13. 민사소송법 개정시 위와 같은 규정이 삭제되어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인정되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일인 1990. 9. 1.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은 판결과 동일하게 확정된 채권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문의: 박문우 변호사(031-874-1652)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이문환



Q 40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게 배우자와 많이도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누가 잘못인지..내가 어떻게 해야할지..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사람인지 정체감의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므로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자기애는 자아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므로 행복한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설정이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존심 높이기 과정이 있

A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내가 누구인지,

습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변화를 주어 장점이 되도록 노력하여 자발적인 시교방식을 갖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 목표설정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하며 자신의 단점을 만들어 주는 침착한 관계의 지지체계를 만들어 어떤일이든지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수있도록 자기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신체적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받은 몸을 풀어주는 자기관리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적절한 돈과 시간의 투자를 하며 선한 일을 찾아내고 행함으로써 성취감을 느껴야 합니다. 어려운것 같지만 이야기 쓰듯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작업을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찾게 되어 내자신은 물론 관계하는 대상과 함께 보다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문의: 포천가족·상담센터(542-3171)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사전심사하여 확인해주는 제도로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반상담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A 지난 11월 15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전심사청구제'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사

제도도입의 취지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수단으로 사용해진 '사후처벌'로는 이미 발생한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새로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하는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든 사업자의 기업활동 지침으로 제공하여 자발적인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심사청구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4개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시행이 확정된 구체적, 개별적 행위가 해당되며(학술적인 질의, 구상 중이거나 추상적인 행위, 공정위의 조사나 심결이 진행중인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 청구 행위를 직접 실시할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청구방법은 정해진 양식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E-mail이나 지방사무소를 경유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사결과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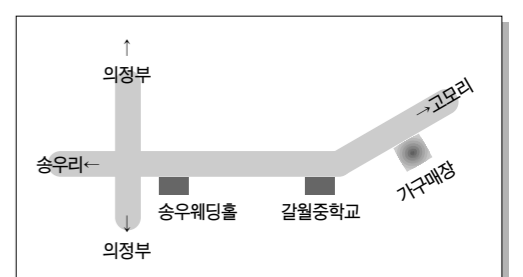
*공인회계사 송 관 수(02-404-9944)

이제는 가구공장에서 직접 구입하세요 "가구창고매장"

- 학생용 · 생활용 · 혼수용 가구 생산가 판매 -



◆공장직영 창구매장◆
서랍장 · 거실장
침대 · 장롱 · 책상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452-3

Tel. 031)543-9431 H.P. 011)341-1443

대표 김 종 태